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28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 어기구 • 이규민 • 홍성국

노웅래 • 임호선 • 윤준병

유정주 • 문진석 • 윤재갑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한 사안이며 UN, OECD, APEC, G20등 국제회의에서도 이는 환경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내에 종합적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체계 구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양폐기물에 관련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3. 해양폐기물 관련 법,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관련 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 6.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국민 제안 및 실천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 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u> <신 설></u>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
	산부 소속으로 해양폐기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u>항을 심의·조정한다.</u>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
	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
	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
	<u>한 사항</u>
	3. 해양폐기물 관련 법,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
	<u>가에 관한 사항</u>
	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

- <u>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u> <u>사항</u>
- 6.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국 민 제안 및 실천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 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
-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 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⑤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u>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u>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 <u>다.</u>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 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